

사매초등학교 생활규정 신·구 대조표

2019.10.16. 개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교사의 교육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사매초등학교’라 칭한다.	<p><삭제 후 추가></p> <p>【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p> <p>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p> <p>③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버이 여기지 않는다.</p> <p>④ 학교 생활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p>
제3조	(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오신2길 7에 둔다.	<p><삭제 후 추가></p> <p>【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p> <p>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p> <p>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p> <p>③ 학교장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학생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시행한다.</p>
제8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전라북도교육감(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매년 배정하는 학급수로 한다.	【학급 수·학생 수·학생정원】 학급 수와 학생 수, 학생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9조	(학급당 학생정원) 본교의 학급당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교육감이 정한 학급당 학생 정원 기준에 따라 정한다.	<삭제>
제10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u>교육과학기술부장관</u> 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정한다.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u>교육부 장관</u> 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정한다.

<p>제11조</p>	<p>(수업일수) 주5일제 운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운영한다.</p>	<p>제10조 【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운영한다.</p>
<p>제12조</p>	<p>(수업운영) ①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현장체험학습은 교과 내용별 현장 체험학습장 발굴 활용, 체험 학습 운영 방법 적정, 도·농간 교류 학습 문제점 개선을 통한 효율적 운영, 가족동반 체험학습 강화, 흠사랑 체험학습 강화 등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3. 이 외 현장체험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정에 따른다.</p>	<p>제11조 【수업운영】 ①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1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생활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현장체험학습 운영 내용은 현장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3. 이 외 현장체험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② 학교장은 학습부진아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13조</p>	<p>(수업)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업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p>	<p>제12조 【수업과 수업 시작】 ①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업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②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p>
<p>제14조</p>	<p>(출결) ②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특별교육 이수기간 내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5. 직계존속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p>	<p>제13조 【출결】 ① 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학교 생활규정에 따른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전입생의 결석일수는 원적 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②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학생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 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p>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1

1)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경조사 일수에 토요일휴업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1)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하며,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중 한 가지를 첨부하여 이를 학교장이 확인한다.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④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 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외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

		<p>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p> <p>⑤ 미인정 결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p>⑥ 지각·조퇴·결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위의 13조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6.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7.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8.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8조	(입학자격) 이 학교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주소지에 해당되는 통장 에게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으로 한다.	제17조 【입학자격】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주소에 해당하는 읍·면·동장 에게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으로 한다.
제19조	(전학·편입학) 이 학교의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8조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편입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귀국 학생 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한다.
제24조	② 제 ①항의 규정으로 ~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가 실시하는 ~ 정할 수 있다.	제23조 【유예자의 학적관리】 ② 제 ①항의 규정으로 ~ 경우에는 교과목별 초기 진급·졸업·전학 평가위원회 가 실시하는 ~ 정할 수 있다.
제29조 ~ 제32조		<p><삭제 후 신설></p> <p>제28조 【학습에 관한 권리】</p> <p>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p>

	<p>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마음대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지 않는다.</p> <p>③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p> <p>제29조 【정규교과 이외 교육 활동의 자유】</p> <p>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가 있다.</p> <p>② 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 등 종례 이후 실시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 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p> <p>③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p> <p>제30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p> <p>①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p> <p>②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학생,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p> <p>③ 학교는 제1항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위해 노력한다.</p> <p>제31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p> <p>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p> <p>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때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해야 한다.</p> <p>제32조 【안전에 관한 권리】</p> <p>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한다.</p> <p>제33조 【휴식을 취할 권리】</p> <p>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p> <p>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 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p> <p>③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p> <p>제34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p> <p>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p>
--	--

	<p>② 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여부와 색상·형태 등은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p> <p>제35조 【사생활의 자유】</p> <p>①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않는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때로 최소화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지 않는다.</p> <p>②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한다.</p> <p>③ 학교는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다.</p> <p>제36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p> <p>① 학생은 가족, 친구 관계, 성적, 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p> <p>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를 달도록 강요하지 않는다.</p> <p>③ 학교의 장은 교육비 등 학생의 개인 정보를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p> <p>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p> <p>제37조 【정보에 관한 권리】</p> <p>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p> <p>② 학생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의 정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p> <p>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교육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으면 고치거나 삭제할 권리가 있다.</p> <p>제38조 【양심·종교의 자유】</p> <p>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대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p> <p>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p> <p>제39조 【표현의 자유】</p> <p>①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p> <p>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p> <p>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가 있다.</p> <p>④ 학생은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p>
--	---

	<p>다.</p> <p>⑤ 학교의 장은 교지를 포함한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을 지원한다.</p> <p>제40조 【자치활동의 권리】</p> <p>① 학교는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 자치활동을 보장한다.</p> <p>② 학교는 학생 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회가 예산을 운영하도록 한다(필요한 경우 담당교사가 개산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p> <p>③ 학교는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p> <p>④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p> <p>⑤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p> <p>제41조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p> <p>① 학생은 학교 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p> <p>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p> <p>제42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p> <p>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p> <p>②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제43조 【건강에 관한 권리】</p> <p>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p> <p>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충분한 보건시설과 쾌적한 환경(난방, 미세먼지 등)을 확보하고 유지한다.</p> <p>제44조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p> <p>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p> <p>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의 청구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p> <p>제45조 【기본행동】</p> <p>① 학교 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p> <p>② 학교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p> <p>③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p> <p>④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p>
--	---

	<p>⑤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품을 착용하지 않는다.</p> <p>⑥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p> <p>⑦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p> <p>⑧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p> <p>제46조 【수업 태도】</p> <p>① 수업 등 교육 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p> <p>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p> <p>③ 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p> <p>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으로 돌아다니지 않는다.</p> <p>⑤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p> <p>⑥ 수업시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 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p> <p>제47조 【휴식시간과 여가활동】</p> <p>① 학교장,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보장한다.</p> <p>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p> <p>③ 여가에 특별실(영어체험실, 도서실, 강당, 돌봄교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지킨다.</p> <p>④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p> <p>제48조 【시설이용과 환경】</p> <p>①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 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p> <p>② 방과 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이용은 학교장의 허락을 얻는다.</p> <p>③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p> <p>④ 쾌적한 수업과 학급 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p> <p>제49조 【개인 소유물】</p> <p>①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p> <p>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었을(절도행위 포함) 때는 학생이나 학생 보호자가 책임진다.</p> <p>제50조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p> <p>①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 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테기) 등의 인화 물질이나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

	<p>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p> <p>5. 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p> <p>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p> <p>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p> <p>8. 차량이나 오토바이</p> <p>9. 기타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p> <p>제51조 【소지품 검사】</p> <p>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학교의 안전을 해치는 물건을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클 때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p> <p>②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0조 제1항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50조 제1항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p>③ 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p> <p>④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p> <p>제52조 【학생 개인물품 관리】</p> <p>① 제50조와 제51조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학생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교가 보관하며,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p> <p>②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의 물품은 5일 이내에 보호자와 상담한 후 즉시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교육 활동시간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해당 교육 활동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p> <p>제53조 【전자기기 사용】</p> <p>① 교육 활동(수업, 청소 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 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② 휴대폰을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학교는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수 있고,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교육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는 1차 경고, 경고 3회이면 학교는 정규 교육 활동시간 내만 5일 이내에 보관 조치할 수 있다. 보관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한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p>
--	--

	<p>부칠 수 있다.</p> <p>제54조 【전자기기 사용】 건전한 정보통신을 위해 학생은 다음 사항을 지킨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을 사용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④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p>제55조 【체벌금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한다.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구를 이용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p>제56조 【교사의 권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당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적 상담과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행동 개선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p>제57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과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 망가진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5. 학부모 통보와 상담 6.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 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p>제58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p>
--	--

		나 학교에 피해를 줬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p><신설></p> <p>제59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p> <p>① 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p> <p>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전 교원, 학부모 대표 2인 등을 위원으로 하되, 인성인권부장을 간사로 한다.</p> <p>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제34조	<p>(징계의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p> <p>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p> <p>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p> <p>⑥ 학교폭력과 관련된 징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위임한다.</p>	<p>제61조 【징계 원칙】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른 징계 원칙은 다음과 같다.</p> <p>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먼저 고려하여 시행한다.</p> <p>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p> <p>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p>
제35조	<p>(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p>	<p>제62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p> <p>④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p>
제36조	<p>(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p> <p>1. 학교내 봉사: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p>	<p>제63조 【징계 방법】</p> <p>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p> <p>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p>

<p>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p> <p>2. 사회봉사: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p> <p>3. 특별교육이수: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p> <p>4. 출석정지: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 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p>	<p>③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p> <p>④ “출석정지”가 10일 이상일 경우 전학을 권고하고, 출석정지 처분 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 동안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p> <p>⑤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p>
	<p><신설></p> <p>제64조 【징계 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① 학교 내의 봉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환경 정리 활동 2. 교내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p>② 사회봉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 미화, 교통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p>③ 특별교육 이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 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출석정지: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에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낮출 수 있다.

제37조	(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③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 【징계 통보와 진술권 보장】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8조	(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③ 각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 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 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66조 【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 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67조 【징계 경감과 해제】 ①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시험)에 응시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0조	(사후 조치)	삭제
제41조	(징계의 기준)	삭제
제42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제68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학교 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제43조	(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의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제69조 【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교 생활규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교사회의 의결 3. 학부모회의 의결 4. 학생회의 의결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p><추가></p> <p>제70조 【문헌 조사와 의견수렴】</p> <p>① 위원회는 학교 생활규정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문헌 조사와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가 결정한다.</p>
제45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72조 【연수와 교육】 개정된 학교 생활규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하고, 학부모에게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